

공 고

<일반공고>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9 - 738호

장위4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주민공람·공고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111호(2008.04.03)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되고, 2009.02.26.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, 성북구고시 제2013-65호(2013.06.20.), 성북구고시 제2015-09호(2015.01.20.)로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 고시된 장위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019년 6월 7일

성 북 구 청 장 인

가. 사업의 종류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사업의 명칭: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다. 정비사업시행기간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

라. 위치 및 면적: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2-1 일대 (153,501㎡)

마. 사업 시행자: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용진

(서울시 성북구 화랑로37길 51, 보령빌딩 2층 ☎ 919-5231)

바. 사업시행계획 변경

1) 구역면적(변경없음)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		비 고
		기 정	변 경	증 감	
구역면적	택지 4-1	37,358.00	37,358.00	-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	택지 4-2	30,994.00	30,994.00	-	
	택지 4-3	17,786.00	17,786.00	-	
	택지 4-4	19,859.00	19,859.00	-	
	택지 4-8	579.00	579.00	-	종교시설
	택지 4-9	505.00	505.00	-	
	택지 4-10	754.00	754.00	-	
	택지 4-12	773.00	773.00	-	근린생활시설
	택지 4-13	468.00	468.00	-	
	소 계	109,076.00	109,076.00	-	

2) 정비기반시설(변경없음)

구 분	명 칭	면 적(m ²)			비 고
		기 정	변 경	증 감	
정비기반 시설 등	공공청사	2,399.00	2,399.00	-	
	공공공지	2,251.00	2,251.00	-	
	도 로	29,254.00	29,254.00	-	
	공 원	5,021.00	5,021.00	-	
	녹 지	5,500.00	5,500.00	-	
	소 계	44,425.00	44,425.00	-	

3) 사업비

기 준	변 경	비 고
1,075,133,661,135원	1,099,017,661,300원	총회 의결사항 반영

4) 건축개요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	증 감	비 고
구역면적	153,501.00m ²	153,501.00m ²	변경없음	
공동주택용지	105,997.00m ²	105,997.00m ²	변경없음	
건축면적	24,539.33m ²	24,368.61m ²	감) 170.72m ²	
연 면 적	지상	283,900.71m ²	감) 9,964.32m ²	
	지하	149,786.28m ²	증) 7,882.25m ²	
	합계	433,686.99m ²	감) 2,082.07m ²	
건 폐 율	23.15%	22.99%	감) 0.16%	
용 적 률	263.36%	253.30%	감) 10.06%	
규 모	지하3/지상31층	지하3/지상31층	변경없음	
세 대 수	2,840세대	2,840세대	변경없음	

사. 공람기간: 2019. 06. 07. ~ 2019. 06. 21. (14일간)

아. 공람장소: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(☎ 02-2241-2833)

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(☎ 02-919-5231)

자.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와 장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고 있으니 공람하시기 바라며, 조합원과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공 램 의 견 서

사 업 명	장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			
공 램 기 간	2019년 06월 07일 ~ 2019년 06월 21일			
대상물건지	건물 :			
	토지 :			
의견제출인	성 명	(인)	생년월일	
	주 소		전화번호	
내 용				

2019. . .

인 사

《발령 제 118 호》

連番	姓 名	發 令 內 容	現 職	
			所 屬	職 級
1	정 지 영	복 직 을 명 함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근무를 명함	행 정 국	지방녹지서기

(2019. 6. 6.字)

《 발령 제 119호 》

連番	姓 名	發 令 內 容	現 職	
			所 屬	職 級
1	송 은 주	복 직 을 명 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 하 여 휴 직 (육 아) 을 명 함 (2019.06.07.~2020.06.06.)	행 정 국	지방간호주사보

(2019. 06. 07.字)

